

#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( 만경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)

의안 번호	2003 -25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 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문화체육시설등이 없는 읍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다목적 복합시설건립이 필요하며 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
- 국비지원요청을 위하여 사전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위 치 :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24-1 번지의 2 필지
- 면 적 : 3,513 m<sup>2</sup> ( 1,062 평)
- 추정가액 : 22,883 천원
- 소 유 자 : 주영숙외 1 인

## 3. 참고사항

- 위치도 1 부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
#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3년도 관리계획변경의 건총괄표 (2-1)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회계명 : 일반회계

구	구분	상			하			합			비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			3필지	3,513	22,883	3필지	3,513	22,883	
		건물									
	매입	토지			3필지	3,513	22,883	3필지	3,513	22,883	
		건물									
처분	교환으로 취득	-									
		-									
	기부채납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교환으로 처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양여	-										
	-										

### 취득대상재산목록 (2-2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가 금액	취 시 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	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주 소	성 명	
계		3필지	3,513	22,883				2인	
1	전	만경읍 만경리 224-1	2,502	21,267	2003년 하반기	만경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	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22-28	주영숙	공시지가
2	유지	만경읍 만경리 221-2	43	68	"	"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농업기반 공사	"
3	유지	만경읍 만경리 223-2	968	1,548	"	"	"	"	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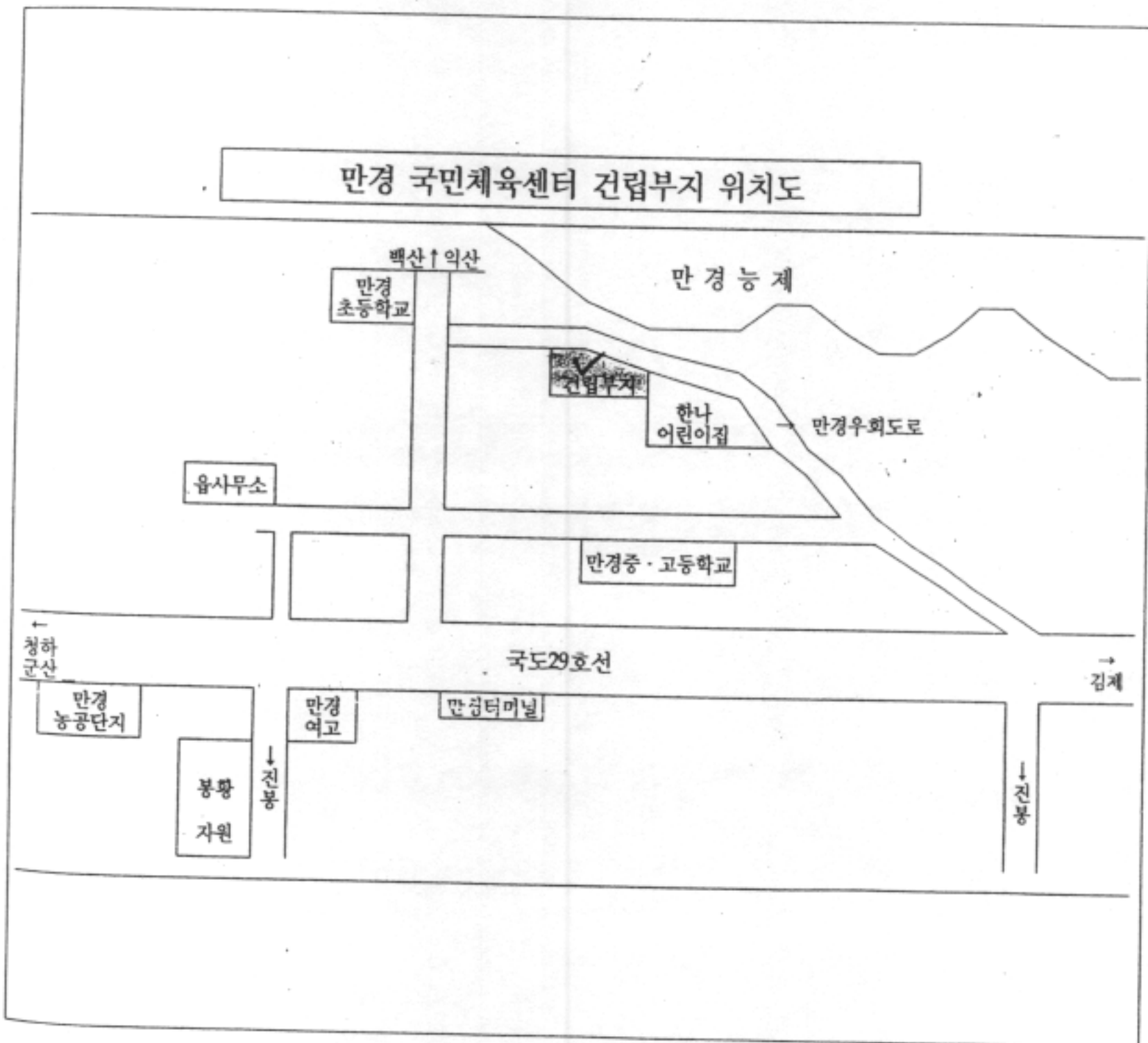
## 만경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

□ 대상토지 :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24-1 번지의 2 필지

□ 면 적 : 3,513㎡( 1,062평 , 지목: 전 · 유지)

□ 추정가액 : 22,883천원(공시지가)

□ 위치도



29. 2000·10·20)

제83조의2 (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용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(본조신설·99·4·30)

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95·5·16, 96·4·27, 98·7·16, 2000·10·20, 2002·11·29>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,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
-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·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신설 95·5·16, 2000·10·20, 2001·9·15, 2002·11·29>
  1.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
  2.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
  3.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  4.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·손실보상 또는 환매

(후 151)